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주요 설명서

[목 차]

1. 계약의 성립
2. 약정기간 설정에 따른 요금 할인
3. 결합판매 요금할인
4. 이용요금 감면
5. 계약의 변경
6.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7. 일시정지 및 이용정지
8. 손해배상
9. 최저보장속도
10. 변경설치비
11. 약정기간 만료시 자동계약 연장
12. 해지
13. 할인반환금(위약금) 부과

1. 계약의 성립

(성립) 고객은 본인명의로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서와 다음의 구비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화 및 온라인 신청시는 신청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의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는 경우 본인신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입제한) 타인명의 사용, 허위서류 제출, 요금 체납, 신용불량 등의 경우에는 가입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서비스의 이용계약기간은 1 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용계약서 교부) 회사는 계약체결 사실은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문자메세지(SMS)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고객에게 이용계약서를 교부합니다.

2. 약정기간 설정에 따른 요금할인

(할인내용) 고객이 사용기간을 회사와 사전 계약하고, 계약기간 동안 소정의 요금을 할인

(할인율) : 서비스정기계약할인

상품		1 년	2 년	3 년	4 년	비 고	
표준요금상품 주)	광랜	3%	5%	10%	17%	※ 할인되는 요금기준은 아래의 무약정 서비스 이용료 기준임	
	스피드	3%	5%	10%	-		
스마트 요금상품	스마트 광랜	2,200 원	4,400 원	8,800 원	-	상품	요금
	스마트 스피드	2,200 원	4,400 원	5,500 원	-	스피드	30,800 원
	스마트 다이렉트광랜	4,400 원	6,600 원	14,300 원	-	광랜	36,300 원
	스마트 다이렉트스피드	4,400 원	6,600 원	8,800 원	-	Giga 라이트	49,500 원
	Giga 라이트	5,500 원	11,000 원	16,500 원	-	Giga	55,000 원
	Giga	5,500 원	11,000 원	16,500 원	-		

주) 표준요금 상품 광랜/스피드 : 2017 년 4 월 1 일자로 신규가입 중단

※ 스마트광랜(1 년/2 년), 스피드(3 년)의 약정기간 할인금액은 2017 년 4 월 1 일(신규/재약정 포함 약정시작일 기준)부터 +1,100 원 추가

3. 결합판매 요금할인

(결합판매) 2 개 이상의 상품(또는 서비스)를 함께 가입해 이용하는 경우로 결합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종류는 유선결합상품과 이동전화결합상품이 있습니다.

(결합할인 반환금)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유선결합상품의 계약(유선결합약정)기간 내 해지 또는 단축, 유선결합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유선결합상품 이용기간 동안 제공받은 유선결합할인 및 혜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결합상품	할인반환금 내용
유선결합	정기약정 외 유선결합약정기간 이내 유선결합구성 상품의 해약 또는 계약휴지 등으로 유선결합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기간 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표준요금상품 할인반환금 = 총할인금액 X {1-(이용기간 할인율/계약기간할인율)} ※ 계약기간 할인율 : 1 년약정 5%, 2 년약정 10%, 3 년약정 15% ※ 이용기간 할인율 : 1 년미만 0%, 1 년이상 ~ 2 년미만 5%, 2 년이상 ~ 3 년미만 10% ○ 스마트요금상품(홈 결합상품) 할인반환금 = 이용개월수 X(약정기간할인액-이용기간할인액) ※ 약정기간 할인액 : DPS(전화) 1,100 원 , DPS(TV)/TPS 2,200 원 ※ 이용기간 할인액 : DPS(전화) - 1 년미만(없음), 2 년미만(275 원), 3 년미만(550 원)

DPS(TV)/TPS - 1 년미만(없음), 2 년미만(550 원), 3 년미만(1,100 원) ○ 약정시작일 2016 년 4 월 1 일부터 가입고객 대상으로는 아래의 할인반환금 산정식이 적용됩니다. = ∑ [이용기간별 총 할인금액 X (1 - 이용기간별 할인율)] ※ 이용기간별 할인율										
구분 (개월차)	1~8	9~10	11~12	13~16	17~20	21~24	25~28	29~32	33~34	35~36
3 년약정	0%	10%	10%	65%	90%	100%	115%	150%	180%	270%
2 년약정	0%	50%	50%	105%	130%	140%				
1 년약정	0%	75%	105%							

(단, 이동전화와 결합된 이동전화결합상품의 결합할인은 할인금을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할인 반환금 면제 사유)

- ① 고객이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지역인 경우(대한민국 영토 한정)
- ② 이전설치로 인하여 기존에 사용중인 서비스와 동일한 속도 및 가격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60 일 이내 고객이 희망하는 동급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 타사도 고객이 희망하는 동급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③ 회사가 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고객에게 설명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 전자인증(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을 받지 않았거나, 전화녹취를 하지 않았을 경우 (결합상품 관련 전체할인, 서비스별 할인, 해지시 위약금 부과 등 약관의 주요 내용)
- ④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월 누적장애시간이 24 시간 이상인 경우
- ⑤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1 시간 이상 장애가 월 3 회 이상 발생한 경우
- ⑥ 군입대의 경우
- ⑦ 이용중인 서비스가 최저속도에 미달하여 5 일 이상 감면을 받은 경우
- ⑧ 가입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⑨ 고객과 협의한 이전설치 희망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전설치가 완료되지 않거나, 장애 발생 후 5 일(영업일 기준)을 초과할 때까지 장애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단, 고객의 부재, 연락두절 등 그 사유가 고객에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일부상품 해지시 유의사항) 유선결합약정기간내 유선결합상품의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하는 상품의 유선결합할인 및 혜택을 반환하여야 하며, 남아있는 상품의 유선결합할인 반환금은 발생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할인반환금을 청구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품이 해지되는 시점에 할인반환금을 청구합니다.

4. 이용요금 감면

유형	적용대상(자격요건)	대상서비스	감면율
복지용 요금감면 ※ 고객은 요금 감면 대상의 자격요건이 변동된 경우에 회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 심신장애자 본인 (장애인복지법 제 2 조) ③ 국가유공상이자 본인 ④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차상위계층등 ※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 대상 : 개인고객, 기본서비스 1 회선 1 단말 - 다른 할인과 중복적용 되지 않습니다(일부 예외 있음) - 본인 및 본인의 거주지(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 부 제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이용료	표준요금상품/ Giga(라이트포함) : 30% 할인 스마트요금상품 : 30% 할인 주)

주) 서비스 가입일이 2017 년 4 월 1 일 이후 고객(재약정 고객 포함)부터 복지감면 할인이 30% 적용되며, 이전 고객은 5,500 원 정액 할인 제공

※ 단, 스마트 다이렉트 상품은 복지감면 미적용

5. 계약의 변경

고객이 접속회선, 전송속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회사에 청구하여 승낙(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고객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기한)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요금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실제 청구되어야 하는 요금보다 많이 청구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6 개월 이후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신기한) 회사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10 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타당한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단, 기한 내 처리할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통지할 수 있음)

7. 일시정지 및 이용정지

제공중단 : 요금체납, 스팸전송 등 법령이나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시스템 개선, 장비증설·점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서비스제공을 중단하는 조치

일시이용정지 : 고객이 정당한 사유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일시정지 할 것을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로, 고객의 신청에 의해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

(서비스제공중단) 고객은 아래와 같은 제공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제공중단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고객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제공중단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료는 부과되지 아니하나, 장비임대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서비스 일시 이용 정지)

고객은 회사에 신청하면 일정기간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일시정지 횟수는 **월 1 회**까지 가능하고, 1 년 동안의 **총 3 개월(90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객이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고,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 고객이 처음 일시 이용정지 신청시 정한 일시 이용정지 종료 일자에 서비스를 재개 합니다. **일시 이용정지 기간은 사용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8. 손해배상

(내용) 회사의 잘못으로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내용을 회사에 알린 후부터 **3 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 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가 누적으로(합산하여) 12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 손해배상 금액 : {(최근 3 개월 요금의 일 평균액÷24 시간) X 이용하지 못한 시간수} X 3

(책임 면제) 서비스 장애가 고객이 직접 구입한 단말장치 등의 불량으로 인한 경우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단말장치 등 : 사용자의 개인 PC 등을 제외한 모뎀(컴퓨터와 전화선을 이어주는 장치), 공유기 등

9. 최저보장속도

회사는 최저보장속도 미달시 고객의 청구에 의해 이용요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구분	광랜	스피드	Giga 라이트	Giga
최저속도	50Mbps	5Mbps	150Mbps	300Mbps

(보상기준) 30 분동안 5 회 이상 전송속도를 측정하여 측정횟수의 60%이상이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할 경우에 해당일의 이용요금 감면, 또한 월 5 일 이상 감면을 받는 경우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10. 이전/변경 설치비

서비스 설치장소 또는 상품변경 등의 사유로 접속회선의 이전 또는 변경설치 시 11,000 원 ^{주)}의 설치비가 부과됩니다.

^{주)} 3 년이상 사용 시 면제 (단, 면제 후 1 년이내 해지 시 할인반환금 청구)

11. 약정기간 만료 시 자동계약 연장

사용기간에 따른 요금할인(약정할인 부분 참조)율의 적용을 받는 고객이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의 조건과 동일하게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자동으로 연장된 계약기간 중에는 최초 계약기간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자동 연장 기간 중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12. 해지

(해지방법) 고객은 본인이 직접 대리점 등 방문, 온라인(홈페이지), 전화, 팩스, E-mail 신청 등의 방법으로 해지 희망일 전까지 해지를 신청합니다. 해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본인	대리인
개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1인에 한함)을 사전에 지정할 경우 지정된 대리인은 신분증만으로 해지 가능
개인사업자, 법인, 국가기관	가입신청시 구비서류와 동일(단, 법인의 경우 대표자 내방시 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사업 자동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 미성년 가입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 모두 해지 가능

(직권해지 사유) 고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 회사의 승낙없이 무단으로 고객의 수익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다시 제공한 경우
3.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그 사유를 1 개월 이내에 해소하지(없애지)않은 경우
4. 기타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서비스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세부 내용은 약관 참조)

※ 직권해지의 경우 회사는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할인반환금(위약금) 부과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 고객이 약정기간(최초 가입 시 회사와 약속한 서비스 의무 사용기간) 중에 해지하거나, 약정한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할인된 요금을 반환(위약금)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위약금 및 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은품(경품) 위약금** : 초고속인터넷 가입 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경품이 있는 경우 1 년 이내 해지 시

○ **장비변상금** : 회사로부터 빌린 모뎀 등의 장비를 분실, 훼손 또는 반환하지 못할 경우 청구되는 금액